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의3서식] <개정 2011.4.11>

행 정 기 관 명

수신자
(경유)

제 목 **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 통지**

귀 단체에 대한 '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'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(근거: 「국세기본법」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)

단 체 의 명 칭		고 유 번 호	
대표자 또는 관리인	성 명		
	주소(거소)		
주 사 무 소 소 재 지			
사 업 내 용	고 유 사 업		
	수 익 사 업		
승 인 취 소 이 유	「국세기본법」 제13조제2항제( )호 요건 불충족 ( )		

끝.

발 신 명 의 직인

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○○○과 담당자 ○○○(전화:)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 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 결재권자 직위 (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 접수 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 주소 / 홈페이지 주소

전화( ) 전송( ) 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70g/㎡(재활용품)]